

2003. 10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
-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 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	2003.10. 8	2003.10. 8	2003.10.17	2003.10.17	지역 개발 과장
충주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	"	"	"	"	허가민원 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안

가) 제안이유

- 충주첨단산업단지, 중원산업단지, 준공업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) 주요골자

-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내지 제5조)
 - 세입(안 제2조) : 산업(공업)용지 매각대,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, 국고보조금 등
 - 세출(안 제3조) : 토지매입비, 지장물매입비, 산업(공업)용지 조성 공사비, 기채이자 등
 - 전입(안 제4조) :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함
 - 준용(안 제5조) : 운영에 관하여는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

나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가) 제안이유

-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고,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) 주요골자

- 건축심의대상 중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행위 심의생략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건축신고시 면적 제한 완화(안 제6조)
-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(안 제7조)
-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변경(안 제20조)
 - 6층을 20미터로(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함)
-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(안 제23조)
-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(안 제2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

-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

나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- 충주시건축조례는 2001. 7. 16일 조례 제543호로 공포하여 운영 하던 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2003. 1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충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새로 운 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음
- 개정되는 충주시건축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세분화 및 표준설계도서 이용확대, 재해복구시 당사자의 수혜,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등 주민편의를 반영하는데 노력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음
- 따라서 각계 시민의 의견 34건을 수렴, 충주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건이 반영, 12건이 수정 반영되고, 6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더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는 미흡한 감이 있음
-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이해당사자들의 법령과 조례안에 대립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규제의 완화 등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

- ▶ 질의 : 안 제3조의 제2호, 제4호, 제8호의 구체적인 내용은?
- 답변 : 제2호는 주로 공사비, 제4호는 산업(공업)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의 선수금조, 제8호는 기타 경비로 부대비 성격임

나.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- ▶ 질의 : 안 제6조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대상은?
 - 답변 : 온실, 축사, 창고 및 식물재배사 등

- ▶ 질의 : 안 제27조제12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?
 - 답변 :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

5. 심사결과

-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: 원안가결
-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

6. 붙임

-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.
-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: 건축사
안 제24조제12항을 삭제한다.

〈수정안 대비표〉

개정안	수정안
제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생략)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: <u>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</u> 2. (생략) ③-⑤ (생략)	제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: <u>건축사</u> 2. (개정안과 같음) ③-⑤ (개정안과 같음)
제24조(건축분쟁조정위원회) ①-⑪ (생략) <u>⑫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</u> <u>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 조례에</u> <u>의하여 임기가 명시되지 아니하고</u> <u>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6월</u> <u>30일까지로 한다.</u>	제24조(건축분쟁조정위원회) ①-⑪ (개정안과 같음) <u>(삭제)</u>